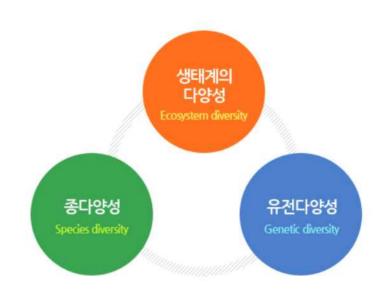
# 주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크게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 서, CITES 협약, 람샤르 협약, 바젤 협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3번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자료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에서 생물다양성은 식물, 동물, 미생물, 생태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CBD)

####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 종종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한지역내 종의 다양성 정도,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합니다.

#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 유전다양성(Genetic diversity)

❖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 ★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2. 교육·홍보·연구·유전자원 접근의 영향 최소화
- 3. 과학기술 협력과 이전/정보교환/재원

####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서식환경 악화, 남획 문제 등의 환경문제
-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 인정
- 생물다양성의 생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발달
-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증가

#### 참고기사:

https://www.kbr.go.kr/content/view.do;jsessionid=9aBNLYqUW8IHJEzyaCP YfYQM1EbXvXWApqQrF1M8QQZSvPS1nHHwJsmKeaddl1qv.nsns\_web\_servlet\_engine1?menuKey=466&contentKey=1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문서입니다.

그동안 자주 발생한 쟁점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것이었습니다. 생물유 전자원을 많이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유전자원 접근 시 규정을 강화하자 주장 하였고, 자원이용국(선진국)은 비상업적인 목적 연구라면 접근절차를 간소화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둘 사이 중심을 잡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고유 내용은 이러합니다.

# 나고야 의정서

#### 1. 접근절차

- 유전자원 및 그 전통지식 접근 시 자원제공국부터 사전통보증인을 받는다.
- 사전통보승인은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 식량위기 해결,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 등의 긴급사태 시 유전자원 이용에 배려한다.

#### 2.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지식을 이용한 국가는 상호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법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한다.

#### 3. 적용범위

-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로서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에는 보유국에 접근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할 때는 상호 합의된 조건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칙이 0생겼습니다. 또한, 생물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나고야 의정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 2\_05\_02\_02&cmsId=FC\_001208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CITES 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 무질서한 채취·포획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CITES 현약

여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일정 기준을 통해 정해집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 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종

#### 참고자료:

https://kbr.go.kr/cites/index.do?menuKey=713 http://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

# 람샤르

협약

람샤르 협약은 특이적으로 습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습지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 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 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인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가입 시 적어도 1개의 람사르 습지를 지정한다.
-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한다.
- 상설사무국은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교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암산용늪, 두웅슾지, 한강밤섬, 송도갯벌 등 24개의 람 사르 습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291

▷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2019년 5월 채택)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

▷ 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 단일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렌 3종으로만 구성된 혼합 폐플리스틱은 통제 대상 제외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하는 협약입니다. 원래대로는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 바젤 협약 한 국제협약이었지만, 2021년부터 플라스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 니다.

> 바젤 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을 수입 혹은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 물의 수령 또는 처리 절차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바젤협약에 맞추어 수출입 허가/신고 항목도 변화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 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 gCd=&boardId=14165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